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이인선의원안)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12.

(3) 회 부 일 : 2025. 5.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등)

현행	개정안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저율 분리과세 특례(제27조) ○ 적용대상: 거주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제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u>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u>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u> - <u>2028년 12월 31일(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인선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6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연장기간별로 3년 연장하는 안(정부안)과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정 이후 30년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146조원 규모의 85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해왔음.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 여건은 악화되고 세수 감소와 복지 분야 등 지출 수요 확대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요청되는 상황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라고 함)는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인프라펀드는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구분되는데²⁾³⁾

현재 「민간투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452개의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2)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크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구분되며, 이 중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발행)하고 투자자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 총수는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드로 운용(평균 800억원 수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인프라펀드 운용 현황(2024.12.10. 기준)]

구분	합계	민간투자법 근거	자본시장법 근거
합계	452개(40.7조원)	10개(6.2조원)	442개(34.6조원)
공모펀드*	2개(3.7조원)	2개(3.7조원)	-
사모펀드	450개(37.0조원)	8개(2.4조원)	442개(34.6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공모 인프라펀드는 1개(맥쿼리한국인프라)였으나, KB발해인프라가 공모로 전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2024.11.)에 따라 2개가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는 개인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4%) 하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유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동 세제혜택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투자에 대하여만 적용함으로써 소수 투자자(사모) 중심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공모 방식의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 동 조세특례 도입 이후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자회사의 순

자산총액은 2020년 2조 1,171억원 규모에서 2024년 3조 4,14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래 사모 인프라펀드였던 'KB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2024년 말 상장(24.11.29.)하여 현재 공모 인프라펀드는 2개사로 확대되었음.

[공모 투자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현황]

(단위: 억원, 각 연도 말 기준)

펀드명	설립일	2020	2021	2022	2023	2024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자회사	'02.12.12 ('06.3.15 상장)	21,171	25,335	25,410	29,119	34,142
KB발해 인프라투자회사	'06.1.24 ('24.11.29 상장)	-	-	-	-	8,811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해당 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상의 자본총계를 기재

** KB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상장시점('24.11.29) 이후의 자본총계만 기재

둘째, 이와 같은 개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증식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이전보다 세제상 유리 점이 높아진 상장법인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본공급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